#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1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이양수・박준태・박덕흠

배준영 • 조지연 • 서범수

이종배 · 김소희 · 서천호

박성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,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, 부족한 말 복지, 경마의 공정성 문제.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

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과 말산업 관

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도록 마사회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.

- 나.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'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'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,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와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, 마주·조교사·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(안 제32조의2).
- 다.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보호 시설 설치를 포함한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(안 제36조제16호 신설).
- 라. 마사회의 임직원, 마주, 조교사,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함(안 제47조의2 신설).
- 마.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함(안 제61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"말관리사"란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,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마사회의 책무) ① 마사회는 경마시행의 주체로서 경마의 공 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마사회는 지속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6조의4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조교사·기수·말관리사

제32조의2제1항 중 "발전"을 "발전과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조교사·기수"를 "조교사·기수・말관리사"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

#### 신설한다.

-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2.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
- 3. 말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5.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제3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- 16. 말의 복지(보호시설 설치를 포함한다)를 위한 사업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7조의2(조교사·기수·말관리사 등의 의무) 마사회의 임직원, 마주, 조교사, 기수 및 말관리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를 시행하여야 하고,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"10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

- 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"를 "제4호부터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
  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
  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  - 3.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 - 8.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5의2. "말관리사"란 조교사를
	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
	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.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마사회의 책무) ① 마사
	회는 경마시행의 주체로서 경
	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
	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마사회는 지속가능한 말산
	업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
	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
	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
	<u>하여야 한다.</u>
제2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	제2조의3(다른 법률과의 관계)
(생 략)	(현행 제2조의2와 같음)
제6조의4(등록 등) ① (생 략)	제6조의4(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수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	

등록을 할 수 없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조교사・기수・말관리사(조 | 교사를보조하여경주마의관리 등의업무를하는 사람을말한 다.이하같다)

5. • 6. (생략)

- ③ ④ (생 략)
-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(諮問)에 응하기 위하여 마 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 다.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조교사·기수·말관리사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말산업발전위원회) ① 제32조의2(말산업발전위원회) ①

-----<u>발전</u>과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

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 한 사항
- 2.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
- 3. 말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 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말산업 발전에 필요 한 사항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(4) -----

- 이 위촉한다. <후단 신설>
- 1. 2. (생략)
- 3.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<u>조</u> <u>교사·기수</u>의 대표자

4. (생 략)<신 설>

<u>5.</u> (생 략) <u>④</u> (생 략)

제36조(사업의 범위) 마사회는 제 저 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~ 1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16.</u>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이 경우
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각
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교사·기수·말관리사
4. (현행과 같음)
5.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3항
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
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
과 경험이 풍부한 자
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세36조(사업의 범위)
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말의 복지(보호시설 설치를
포함한다)를 위한 사업
<u>17.</u> (현행 제16호와 같음)
세 <u>47조의2(조교사·기수·말관리</u>
사 등의 의무) 마사회의 임직
원, 마주, 조교사, 기수 및 말관
리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

를 시행하여야 하고, 불법경마

제61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 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 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| <삭 제>

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 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 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.

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 한 자
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 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<u>②</u>	
	<u>300만원</u>
제4호부터	

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 한 자

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<삭 제> 위반한 자
- 3.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 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4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<삭 제>

- 4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불법 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